

의안번호	제 323 호
의 결	2023. 11. 5.
연 월 일	(임시 제2차)

의 冱 사 항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승인안

금융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주현
제출 연월일	2023. 11. 5.

1. 의결주문

한국거래소(이하 "거래소")가 승인요청한「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증권시장의 안정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해 거래소가 승인 요청한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금융위원회가 승인하고자 함

3. 주요골자

- 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조의4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코스피200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제4항 제1호에서 정하는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에 대해 '23.11.6일(월) 부터 '24.6.30일(일)까지 공매도를 금지함
- 나. 현재 공매도를 금지중인 코스피200 주가지수 구성종목을 제외한 유가 증권시장 상장종목, 코스닥150 주가지수 구성종목을 제외한 코스닥 시장 상장종목 및 코넥스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해 공매도 금지 기간을 '24.6.30일(일)까지로 함
- 다. 시장조성자의 시장조성호가 등 시장안정을 훼손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금지조치의 예외로서 차입공매도 허용
 - ※ 금융위 승인 후 한국거래소 시스템 변경을 거쳐 시행(11.6일)

(별지)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

- □ (대상종목)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및 코넥스시장 상장 주권 등 * 주권, DR, ETF, ETN, ELW, 신주인수권증권, 신주인수권증서, 수익증권
- □ (금지기간) ① 코스피200, 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인 상장 주권 : '23.11.6. ~ '24.6.30.
 - ② 그 외 : 현재 금지 중 ~ '24.6.30.*
 - * '21.2.3일 금융위 의결에 따라 공매도 금지조치가 별도 결정시까지 연장된 상태 → 금번 의결에 따라 금지기간 종료시점을 '24.6.30일로 정함
- □ (예외거래) 시장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는 다음의 경우는 금지조치의 예외로서 차입공매도 허용
 -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 ㅇ 유동성공급자가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경우
 -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 제83조에 따른 시장조성자가 시장조성계좌를 통하여 매수한 선물거래종목 또는 매수하거나 매도한 옵션거래종목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 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 상장지수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한 상장 지수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 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하여 유동성공급호가를 제출하는 회원이 매수하거나 매도한 주식워런트증권의 가격변동에 따른 손실을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기초주권을 매도하는 경우
 - ㅇ 그 밖에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호가
- □ (조치근거) 자본시장법 제180조제3항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17조제6항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9조의2제6항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제11조제6항

【별첨】

관계 법규

□ 자본시장법

제180조(공매도의 제한) ③ 금융위원회는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상장증권의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 제17조(공매도호가의 제한) ⑥ 거래소는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호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주가하락률 및 차입공매도 비중 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 2. 법 제180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한 종목

□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 제9조의2(공매도호가의 제한) ⑥ 거래소는 제2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 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호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주가하락률 및 차입공매도 비중 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 2. 법 제180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한 종목

□ 코넥스시장 업무규정

- 제11조(공매도호가의 제한) ⑥ 거래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목에 대한 차입공매도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를 위한 차입공매도 호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1. 주가하락률 및 차입공매도 비중 등이 세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목
 - 2. 법 제180조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증권시장의 안정성 및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거래소의 요청에 따라 범위, 매매거래의 유형, 기한 등을 정하여 차입공매도를 제한한 종목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자본시장과
연 락 처	2100-2644